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가단32486 부당이득금
원 고 00해상보험 주식회사
광주 동구 00로
대표이사 0000인 원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이00, 양00
피 고 1. 김00 (0000000-00000000)
최후주소 익산시 00면
2. 강00 (0000000-00000000)
익산시 00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00
변 론 종 결 2008. 7. 1.
판 결 선 고 2008. 7. 15.

주 문

1. 피고 김00은 원고에게 59,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2007.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강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OO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2007.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한회사 OO산업(나중에 '유한회사 OO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은 2005. 12. 22.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전북 06다 0000호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OO산업, 보험기간 2005. 12. 22.부터 2006. 12. 22.까지, 보험종목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임대 및 운전자

OO산업은 2005. 12. 31. 피고 강OO와 사이에 임차인 강OO,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뒤 피고 강OO의 동생인 강OO가 피고 김OO을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피고 김OO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4. 14. 15: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OO면 OO리 소재 OO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문OO(여, 3세)을 이 사건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문OO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개복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이 기명피보험자(OO산업)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비록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원고)는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김OO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으로 OO산업으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2006. 6. 9.경 망 문OO의 유족에게 책임보험금(대인배상 I)으로 100,490,000원, 대인배상 II으로 59,865,000원 합계 160,35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보험금은 망 문OO의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이고, 원고는 위 대인배상 II에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구상금으로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김OO 사이 : 공시송달

원고와 피고 강OO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강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강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는 피고 강00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강00는 동생인 강00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강00가 00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피고 김00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을 관리, 사용하거나 피고 김00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 강00가 이 사건 차량의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여 운행자 책임이 없는 것인지에 있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차량을 임차할 경우 명의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강OO는 동생 강OO가 신용불량자로서 직접 차량을 임차할 수 없자 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OO산업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강OO가 위와 같이 강OO에게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 ③ 강OO는 위 임차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리는 물론이고 차량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독점적으로 해 온 사실, ④ 운전자인 피고 김OO의 채용도 강OO가 전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고 피고 강OO는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사실, ⑤ 강OO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김OO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2006.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그 운행을 지배한 사람은 강OO이고, 피고 강OO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강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 _____